

聽講生제도의 導入을 제안한다

朴 基 彦
(全南大 教育學科)

1. 問題提起

오늘날 우리들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變動的 인 特性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 그 하나는 社會·文化的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教育的 측면이다.

社會·文化的 측면에서 볼 때 現代人은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기성 관념에 대한 急進的修正을 요구하는 여러 사회·문화적 힘에 의해 휩쓸려 가고 있으며¹⁾, 教育的 측면에서 볼 때에도 모든 사람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變動하는 사회에 適應해 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教育이 전통적으로 全日制

學校教育에 치중한 나머지 학교교육 기회를 상실하였거나 학교교육을 계속 받고 싶은 사람에게 教育機會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學校 밖의 젊은 청장년이나 專門 직장인 및 기술인에게는 教育받을 기회가 제공되지 못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生業에 대한 不適應 상태가 유발되고, 이러한 不適應은 키다란 教育問題로 대두되고 있다.

Edgar Faure도 傳統主義 教育觀이 붕괴되지 않을 수 없었던 菲연성을 經濟成長이 교육 성숙을 앞지른 점과 未來社會에 대한 訓練의 필요, 教育의 產出과 社會的 要求 간의 괴리 현상, 사회·경제적 변동 수요에의 적응, 그리고 教育 자체의 계속적인 更新의 필요성에

서 찾고 있다.²⁾

말할 필요도 없이 教育制度는 民主主義의 기본 이념 아래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教育機會의 均等은 개인이나 사회의 발전을 위해 보장되어야 한다. 社會의 役割의 전문적 분화나 教育 자체의 보편적 경향에 따라 自己生涯의 효율적인 적응을 위해 自己水準에 맞추어 教育받을 기회를 보장받는 것은 人間의 첨부적인 權利요 義務인 것이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教育體制의 多樣性(diversity)과 開放性(openness)³⁾이다.

대학 본래의 理念 측면에서도 大學은 고도의 知的文化을 계승·창조·발전시키며 그것을 國家 社會를 위하여 활용하고 봉사해야 할 貢務가 있다.

1) G.W. Parkyn, *Towards a Conceptual Model of Life-long Education* (Paris: UNESCO, 1973), p. 11.

2) Edgar Faure and others, *Learning to be—The World of Education Today and Tomorrow* (Paris: UNESCO, 1970), p. 313.

3) 金永哲·朱京蘭 편, 「學校制度」(서울: 韓國敎育開發院, 1986), pp. 33~34.

일반적으로 알리져 있는 바와 같이 대학의 기능은 知識의 繼承과 전달 그리고 적용에 있고 대학이 教授·研究·奉仕를 사명으로 하는 知識人的 공동체임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大學을 필요로 하는 專門職場人이나 고도의 知識·技術을 필요로 하는 一般社會人에게 그 知性的 使命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大學이 대학 스스로 지니고 있는 풍부한 人的·物的·規範的 차원을 통하여 大學自體의 育成이 필요함은 사실이나, 또하나의 使命으로 大學 밖의 社會開發을 위한 社會教育의 役割도 중요한 영역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오늘 날 일반 대중의 教育水準이나 生活 및 職業의 專門性으로 보아 오히려 中等教育機關보다 高等教育機關에서의 專門教育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大學開放의 필요성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82년 이후 社會教育法과 社會教育法施行令 그리고 社會教育法施行規定 등 社會教育 關係法規를 제정·공포하여 대학으로 하여금 社會教育의 役割을 다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2. 大學開放과 平生學習體制

현재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課題는 高學歷化 社會에 있

어서의 教育의生涯化이다. 이것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大學教育 자체의 內容이나 方法이 그에 알맞게 變容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이 社會教育的機能을 다하기 위해서는 大學社會뿐만 아니라 一般社會의 教育風土가 '간판' 회복을 위한 社會가 아닌 能力社會를 기대하는 學習社會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學習社會에 있어서 大學의 機能은 '간판'보다 能力を伸張시키는 學習社會의 特性에 따라 成人에 대한 사회교육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확대 발휘하는 일이다. 이는 대학이 社會를 개발하고 필요한 人力을 양성해 냄으로써 사회를 學習社會化하려는 先覺的期待와 변동하는 時代의 要求에 부응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學習機會는 大眾化되고 平等化되며 菲廉적으로 大學의 社會教育的機能이 더욱 더 요청된다.⁴⁾

따라서 오늘날의 大學은 대학 본래의 使命인 學問研究와 教授를 위한 全日制 教育 이외에 또 다른 機能으로서前述한 바와 같이 대학 밖의 成人, 青少年, 專門職業人, 高次的 教養을 필요로 하는 生活人 그리고 부분적으로 大學教育을 필요로 하는 모든 社會人을 위해 다양한 社會教育 또는 平生教育體制를 研究·調查·開發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大學教育이 지난 또하나의 '중

대한 課題'이며 존중되어야 할 使命이다. 지금까지의 大學이 엘리트 중심의 學位取得을 위한 社會과 한다면, 이제부터는 순수한 學問 연구와 社會의 필요에 부응하는 學習社會가 되어야 함은 물론 성별·연령·직업에 관계없이 自己能力과 水準에 맞게 教育機會를 부여 할 수 있는 體制를 구축하여야 하고 그렇게 計劃되어야 한다.

大學을 학위 취득의 手段으로만 이용하고 졸업장이나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만의 學習場이라는 잘못된 大學人の 생각은 修正되어야 한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날로 급변해 가는 자기 生業에서의 새로운 理論이나 技能을 터득하기 위하여 大學에 돌아와 漢講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大學進學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이 청강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 운영자, 대학 정책 수립자 그리고 교수와 학생까지도 大學을 필요로 하는 대학 밖의 성인·청소년들에게 대학교육을開放해야 한다는 思考의 轉換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大學이 적극적으로 漢講 회장자를 끌어들이는 社會教育的 姿勢가 요청된다.

3. 外國大學의 社會教育動向

먼저 英國 大學의 成人教育

4) Peter Jarvis,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London: Croom Helm, 1983), p. 24.

動向부터 살펴 보기로 한다. 1850년 육스포드대학의 William Swewell 교수는 대학 당국에 제출한 ‘大學擴張을 위한 提案 (suggestion on university extention)’이라는 建議書에서 육스포드대학의 排他性을 비난하고 공장 지대의 중심 지역과 인구 밀집 지역에 이 대학의 教授陣이 가르치는 講座를 개설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로부터 수십 년 후 캠브리지대학의 James Stuart 교수 또한 大學教育 擴張을 촉구함에 따라 드디어는 이를 승인하게 되었는데, 초기에는 巡迴大學이라는 형태로 大都市를 순회하면서 주로 短期講座를 통하여 대중들에게 제공되었다. 이러한 대학의 社會教育的機能을 大學評議會가 인정하고 설치를 승인한 것은 1873년이었다. 그리하여 캠브리지대학, 런던대학, 육스포드대학에 ‘大學校外指導部 (extra-mural department)’가 설립되었다. 이로부터 英國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주로 18~25세까지의 청년들을 위한 定時制課程 (part time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전환하면서 육스포드대학과 캠브리지대학이 지원한 大學校外指導部運動을 통해 成人教育을 위한 短期課程이 大學에 설치됨으로써 高等教育이 보편화되었으며, 이러한 教育은 시험과 경력에 관계없이 大學教育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教育機能으로 존속되었다.⁵⁾ 또한 大學校外指導部는 노동자교육협회 (Worker's Educational Association: W. E. A.)와 연합하여 교육의 기회를 놓친 노동자 계층의 교육을 담당하는 成人學級團體을 형성하여 교육하기도 하였다.

英國에 있어서 大學開放의 전형적인 예는 開放大學 체제 (open university)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학 청강생 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고 우리나라 開放大學과는 상당한 차이를 지니고 있지만, 職場人教育을 담당하는 대중적 大學社會教育 機關임에는 틀림없다. 論外의 것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開放大學은 최근에 와서 그 기능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음을 볼 때 세계의 大學社會教育潮流에逆行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듈다. 따라서 制度的再檢討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동유럽으로 눈을 돌려 폴란드의 동향을 살펴 보면, 폴란드 종합대학 또는 단과대학에서의成人教育은 영국의 校外教育指導部처럼 어떤 분리된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 안에 成人教育科가 있어 이를 중심으로 의무적으로 成人教育에 관한 講義나 學級 편성 또는 教育內容 計劃을 세워 계획성 있게 시행하고 있다.⁶⁾ 成人教育科는 職場人 대상이므로 定時制課程으로 운영되고, 그

종류 또한 다양하여 夜間制課程 (evening course), 校外教育課程 (extra-mural course), 샌드위치 과정 (sandwich course) 그리고 外部學習課程 (external studies) 등이 있어서 일반 직장인과 성인들의 學習機會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다음에는 美國에서의 동향을 약술한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전파된 大學擴張運動 (university extension movement)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존스 흥킨스대학 Herbert B. Adams의 주장을 계기로 ‘大學擴張課程’ (university extension program)으로 발전되었다. 특히 1972년 시카고대학의 Cyril O. Houle 교수는 대학 밖의 成人을 위한 大學擴張教育의 目的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즉, ① 대학은 대학 외 부인들에게 學位課程을 제공할 기회를 확대시키고, ② 專門職業從事者에게 계속교육적 再教育 (re-establishment education)을 定時制課程으로 운영하며, ③ 성인들에게 꽃 넘고 깊이있는 중년기 학습 경험 (mid-life learning experience)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基本精神에 입각하여 현재 大學外 成人에게 學位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準學位 (associate degree), 學士·碩士學位까지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허용되고 있다. 그리고

5) 朴基彦, 「大學社會教育論」, 全南大學校 出版部, 1989, pp. 49~50.

6) 「上揭書」, p. 68.

校外學位課程(external degree program), 校外學級課程(off-campus class), 大學水準試驗課程(college level examination program) 等은 대학 밖의 成人, 青少年, 專門 職場人 등에 대한 大學의 사회교육적 배려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⁷⁾

美國 대학 成人教育 프로그램 속에는 학교 밖의 성인을 위한 繼續教育으로서 여성교육, 노인교육, 빈곤층 및 신체장애자 교육, 그리고 교정교육으로서의 罪囚教育 등도 포함되어 있다. 美國의 대학들이 大學外部의 成人社會教育에 대하여 얼마나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가는 다음의 한 가지 예로도 짐작할 수 있다. 미네소타대학은 自動 教授方法과 多媒體 補助課程을 통해서 전문적인 계속교육의 未來를 보여주고 있으며, 위스콘신대학은 自己補助 授業課程을 學外學位(external degree) 과정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인디아나의 약사들도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2년마다 30시간의 계속교육을 받게 되어 있으며 페듀대학의 계속교육 학교는 단기과정, 협의회, 비디오프로그램, 녹음테이프, 多媒體結合 프로그램 계획 등을 세워 실시하고 있다.⁸⁾ 이처럼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는 美國 대학 成人教育은前述한 바와 같이 성인들에 대한 學位課程(degree course)과 非學位課程(non-degree course)으로 大別할 수 있

는데, 이 모두 社會教育的 價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글으로 外國의 大學 社會教育 가운데 독특한 것은 스위스의 경우이다. 스위스는 英國이나 美國처럼 강대한 국가도 아니고 高等教育 機關이 많지도 않은 나라인가는 하나, 大學 社會教育에 있어서는 매우 특색있는 나라이다. 스위스의 聽講生制度(auditor system)는 모든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학력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어떤 大學 課程에 대해서도 흔히 강연회에 참가하듯이 교육받을 수 있다. 청강생들이 수강하는 내용은 특별히 편성되거나 준비된 것이 아니라 正規 大學生에게 제공하는 것들이다. 청강생들은 거의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등록하여 청강한다. 이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聽講生制度가 大學 成人教育의 일반적인 체제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청강생 제도에 비교되는 또 하나의 제도는 스위스 대학에 연합된 國民大學(people's university)이다. 國民大學體制는 이 나라의 대학 사회 교육 체제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大學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어떤 방식으로든 地方國民大學(local people's university)이併設되어 있는데, 一般大學과 地方國民大學이 밀착되어 있다는 점은 教育的 意味가 매우 큰 것이다. 예를 들어 쥐리히

대학에서는 國民大學에 대하여 大學施設과 教授陣을 제공하고 있으며, 市와 州의 대표 또는 사회단체 등에서도 원조하고 있다.

4. 結論

오늘날 우리들은 생활 전 영역에 걸쳐 기성 관념에 대한修正을 요구하는 社會·文化的 환경 속에서 生을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변동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知識 및 技術을 계속 습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전통적인 學校教育 體制에 치중한 나머지 대학교육의 기회를 상실하였거나, 學校教育 후의 계속교육이나 자신의 職業과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날로 변화되어 가는 知識·技術 등을 교육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학은 적합한 제도나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대학이 存立해야 할 目的 중의 하나는 사회를開發하고 필요한 고급 인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대해 아직도 보수적이고 상아탑적인 지식 전수의 기능만을 주장한다면, 분명히 時代錯謨의 생각이라 아니할 수 없다. 現代는 일반 대중의 知的·技術的 水準이나 思考水準이 옛날과는 큰 차이가 있으며, 각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직업인들의 수준도 날로 향상되고 있

7) 「上揭書」, pp.80~81.

8) 「上揭書」, p.88.

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다시 대학에 돌아가 급변하는 지식과 기술을 학습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더구나 대학교육의 기회마저 갖지 못한 사람은 더욱 대학 講義室이나 實驗室 또는 研究室이 절실했을 것은 再言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의 社會는 출 업장을 필요로 하는 '學位(學歷)社會'가 아니라 學習社會에 의한 '能力社會'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知識·技術 수준이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계속교육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변동 사회에 맞추어 변혁되지 못하는 사람은 生業에 적응할 수 없으며 삶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大學이 그 내용과 시설을開放하지 않고서 책무를 다했다고는 할 수 없다. 大學을 필요로 하는 知識人·技術人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前述한 바와 같이 英國 대학의 校外指導部가 남긴 社會教育의 공헌이 社會에 대한 대학의 責務를 다하게 한 것이며,

스위스 대학들의 應講生制度가 국민 대중 교육의 수준을 向上시킨 것은 사실이다. 또한 美國의 成人教育의 大學擴張運動은 미국을 바로 세계 한 것이다.

筆者는 우리나라 대학도 全日制 大學生 이외에 定時制 大學受講生 制度를 구축함으로써 대학을 필요로 하는 成人과 職業人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결실하다고 보며, 이를 반대하거나 경시하는 대학인과 대학 정책 수립자들에게 再考있기를 촉구한다. 대학의 施設이나 空間的 教育環境도 大學 社會教育의 차원에서 설계·운영되어야 하며 대학의 연구 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職場을 가진 외국의 定時制 學生數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대학생 연령층이 점점 成人化되어 가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

〈参考文獻〉

- 朴基彦, "平生教育側面에서 본 社會教育의 課題", 「教育研究」, 제 5집, 全南大 教育研究所, 1979.
_____, "平生教育과 生涯教育의 比較", 「教育論叢」, 제 3집, 全南大 教育大學院, 1982.
_____, "關係法規에서 본 社會教育의 機能", 「全南大 論文集(人文卷)」, 제 29집, 1984.
_____, "韓國의 社會教育政策動向과 課題", 「全南大論文集(人文卷)」, 제 30집, 1984.
_____, "大學教育의 社會教育의 開放論", 「高等教育研究」, 제 1권, 韓國高等教育研究會, 1989.
_____, 「大學社會教育論」, 全南大學校出版部, 1989.
Edgar Faure and others, *Learning to be—The World of Education Today and Tomorrow* (Paris: UNESCO, 1970).
G.W. Parkyn, *Towards a Conceptual Model of Life-Long Education* (Paris: UNESCO, 1973).
Peter Jarvis,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London: Croom Helm, 1983).